제 1179 호
1985. 9. 1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
편집인 : 공 보 관 이 광 우
전 화 : 731-6111-3
인 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 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
제 618 호 : 도시계획용도지구 (미관) 변경결정 …… 2
제 619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 …… 2
제 620 호 :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, 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 …… 3
제 621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결정 …… 4
◎ 공 고
제 546 호 : 가스용품제조업허가취소 …… 4
제 547 호 :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람공고 …… 5
제 548 호 : 도시계획사업 (공원조성) …… 5
◎ 사 령

공											
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18 호

도시계획용도지구(미관)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도지구(미관)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같은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 19

서 울 특 별 시 장

○ 미관지구 변경결정조서

구분	변경사항	위치	폭 (m)	연장(m)	면적 (㎡)
변경	4종-2종	용산구한강로 2 가 15- 한강로 3 가 45 의 2	12 (양측)	460	11,040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19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1항 1호 나목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면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 19

서 울 특 별 시 장

○ 시 설 조 서

구 분	등 급	류 별	폭 원	연장(m)	기 점	종 점	비 고
기 정	소 로	1	10m	60	도봉구월계동232번지	월계동232번지	
변 경	〃	1	〃	80	〃	〃	위치변경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20 호

도시계획시설 (하수도, 도로) 결정및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, 도로)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1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6 조 1 항 1 호 나목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 12 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면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 19

서 울 특 별 시 장

○ 시 설 조 서

• 하 수 도

구 분	시설명	위 치	규 모 (㎜)	비 고
신설	하수도	성산동 339 의 2 - 응암동 91 의 13	B = 1.3-3.1 L = 8,979	불광천내 좌, 우안하수도
〃	〃	상암동 565 의 6 - 홍은동 48 의 70	B = 1-4.2 L = 10,480	홍제천내 좌, 우안하수도
〃	〃	양화동 163 의 10 - 시흥동 733 의 1	B = 1.4-11.3 L = 12,932	안양천내 우안하수도
〃	〃	염창동 122 - 고척동 71 의 2	B = 5.2-7.4 L = 7,320	안양천내 좌안하수도
〃	〃	합정동 94 의 2 일대	700 ㎡	

• 도 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(m)	연장(m)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2	8	440	문래동 3 가 68	문래동 3 가 59	
변경	〃	〃	〃	〃	〃	〃	폐 지
기정	〃	〃	〃	80	문래동 3 가 75	문래동 3 가 67	
변경	〃	〃	〃	〃	〃	〃	폐 지
기정	〃	〃	〃	46	문래동 3 가 61	문래동 3 가 61	
변경	〃	〃	〃	〃	〃	〃	폐 지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21 호

도로계획시설(도로)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·윤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1항1호 나목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면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 19
서 울 특 별 시 장

○ 시 설 조 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신설	소로	2류	8m	300m	암사동20	암사동 73-4	
〃	〃	〃	〃	30m	〃 2-1	〃 2-1	
〃	〃	〃	〃	46m	〃 40-4	〃 40-5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46 호

가스용품제조업허가취소

1.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용품 제조업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5. 9. 19
서 울 특 별 시 장

다 음

지정번호	업소명	소 재 지	대표자	취 소 사 유	조치내역	취소일자
10-8	유 영 공업사	영등포구 도림동 196-1	유영세	1. 무단장소 이전 2. 휴지재개 신고미이행	허가취소	85.9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47 호

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람공고

1. 하수도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 서마호 제 1 호(85.7.25)로 공공하수도공사 허가된 하수도 공사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및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5. 9. 19

서 울 특 별 시 장

공 람 개 요

가. 사용개시년월일 : 공고일로부터 16 일 이후

나. 배수구역 : 하수관망도 참조(마포구청토목과 비치 도면생략)

다.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: 서울시마포구아현동 437-4 번지 일대

라.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구분 : 합류식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48 호

도시계획사업 (공원조성)

1. 서울시고시 제 689(83.12.26) 호로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된 관악산 자연공원 서울대입구 및 신림계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시행허가를 위한 서류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 2 에 의거 14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.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을 공람기간내에 제출하기 바란다.

1985. 9. 19

서 울 특 별 시 장

사업의명칭	사업내용	위 치	규 모	사업시행자	공람장소	공람기간
도시계획사업 (공원조성)	매 점	관악신림 210	1층 1동 150	서울시마포구아현동 663-13	관악구청 공원녹지과 (전화)	(시작) 85.9.19 (끝)
	공중변소	신림동산 50-2 외 2 필지	1층 3동 198	심 영 택	877-4284	85.10.2 (14 일간)

사업의명칭	사업내용	위 치	규 모	사업시행자	공람장소	공람기간
	상수도	(시점) 신림동 155-1 (종점) 신림동산 50-2				

사 령

◎ 1985.9.19 일자 령제 347 호

성 명	발 령 부 서	현 부 서	직 급
권 영 섭	대법원 판결 (사건 85 누 148 85.7.9) 에 의하여 '83.6.17 자 정직 3 월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	용산구한강로 2 동	지방행정서기

◎ 1935.9.20 일자 발령제 346 호

성 명	발 령 부 서	현 부 서	직 급
신 재 익	동부병원	성동구 재무과	지방행정서기보
김 경 숙	〃	성동구 시민봉사실	〃
조 인 희	공보관	용산구 청소과	〃
박 봉 주	건설관리국 건설행정과	구로구 보건소	〃
한 경 욱	내무국 인사과	중구 수도관리과	〃
윤 혜 정	강동구 (5 년간 동근무)	강서구 신월 3 동	〃

서 울 특 별 시 장